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정상우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연구자: 정 상 우(인하대학교 교수)

유네스코(UNESCO)가 2005년 10월 20일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을 채택하였고, 우리나라는 동 협약의 110번째 비준 국가로 2010년 6월 23일 동 협약을 비준함에 따라 협약 당사국으로 국제협약이 요구하는 권리와 의무를 적극 반영하고 구체적 이행을 위하여 국회에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2014년 제정하였다. 동법은 제정 당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다문화가족 지원법」 등과의 중복 입법 문제로 인해 15개의 조문으로 간략한 입법이 되었고, 기본계획의 수립, 문화다양성위원회, 실태조사, 연차보고, 국가보고서, 각종 지원정책, 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이 주요 내용을 이루었다. 동법에 대한 입법평가를 위해 헌법, 문화다양성 협약과 관련 법률 등과의 법체계 비교, 그리고 입법목적의 달성에 대한 평가를 시행한 결과 문화다양성정책과 다문화정책의 혼선 위험성, 동법의 정비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동법의 효과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문화다양성 정책의 지침 구체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다양성 조례 제정의 근거 명시,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모니터링 체계에 적합한 법률 개정, 문화다양성 정책 대상의 명확화, 양성평등 등 문화다양성 인식 제고를 위한 법률 개정, 시민사회 참여를 위한 법률 개정을 제안하였다.



# CONTENTS

Issue Paper

## I. 서론

- 1. 입법평가의 배경 및 필요성 04
- 2. 입법평가의 대상 05
- 3. 입법평가의 범위 06

## II. 분석 대상 법률 개관

- 1. 분석대상 법률: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07
  - 2. 입법 배경 08
  - 3. 법률 제정 경과 14
  - 4. 법령의 주요 내용 15
  - 5. 관련 조례의 제정 18
  - 6. 법률 개정 수요 19

## III. 입법평가의 쟁점 분석

- 1. 서설 20
- 2. 쟁점의 정리 21

## IV. 법체계 분석

- 1. 문화다양성 협약과의 관계 23
- 2. 헌법과의 관계 26
- 3. 타 법령과의 관계 29
- 4. 법률 내부의 상충 또는 경합 34

## V. 입법목적 및 사회적 영향 분석

- 1.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36
- 2. 문화적 삶의 질 향상 38
- 3.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 39

## VI. 대안 및 권고

- 1. 문화다양성 지침 규정 41
- 2. 지방자치단체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근거 명시 42
- 3.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모니터링 체계에 적합한 법률 정비 42
  - 4. 정책 대상의 명확화 43
- 5. 양성평등 인식 제고를 위한 법정비 44
- 6. 시민사회 참여를 위한 법정비 44

## 참고문헌



# I. 서론



## 1. 입법평가의 배경 및 필요성

### ● 협약 가입과 법률 제정으로 정책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음

- 유네스코(UNESCO)가 2001년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에 이어, 2005년 10월 20일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을 채택하였고, 우리나라는 동 협약의 110번째 비준 국가로 2010년 6월 23일 동 협약을 비준함에 따라 같은 해 7월 1일 발효됨.
- 조약은 헌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으나 우리나라는 협약 당사국으로 국제협약이 요구하는 권리와 의무를 적극 반영하고 구체적 이행을 위하여 국회에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2014년 제정하였음.
- 법 제정 당시 우리나라는 이주민이 약 140만 명에 이르렀고 세계화, 문화의 상품화에 대처하면서 문화간 공존과 사회통합, 문화적 창조력 제고를 위하여 문화다양성 협약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었음.

### ● 다문화사회 관련 입법 체계 구축

- 문화다양성법 제정은 다문화사회 이민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이라고 할 수 있음.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 지원법」이 이미 제정되어 있었음.
- 특히 문화다양성법은 다문화가족 지원법과의 관계에 있어 법체계상 논란이 있었고, 문화다양성 개념이

다문화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많았음.

- 문화다양성법이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된 지 4년이 흘렀고, 동법에서 규정한 내용들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음.

### ● 문화다양성 및 문화다양성 교육 조례가 시행되고 있음

- 문화다양성협약과 문화다양성법에 따라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가 광역자치단체 6곳, 기초자치단체 5곳 등 총 11곳에서 제정·시행하고 있고,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도 경기도와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제정·시행하고 있음.

### ● 우리 사회의 문화다양성이 강화되어 감에 따라 문화다양성 개념 및 정책의 재정립이 필요함

- 문화다양성법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문화다양성 정책의 중복, 혼선 등이 나타날 수 있는 바, 문화다양성 법 제정과 시행에 맞추어 개념을 재정립하고 정책에 혼선을 예방할 필요가 있겠음.
- 문화다양성정책 또는 다문화정책의 중복 방지를 위한 법제 정비의 전제로서 현행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를 실시할 필요성이 제기됨.

## 2. 입법평가의 대상

###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 문화다양성법은 편제가 15개 조문, 동법시행령의 경우 11개 조문, 동법시행규칙의 경우 3개의 조문으로 되어 있어 법령 자체의 규정이 많지 않아 특정 조문보다는 법령 전체를 입법평가 대상으로 삼고자 함.
- 입법목적과 법체계의 중복 염려가 지적되어 왔기 때문에 문화다양성의 개념과 다문화가족 지원법과의 관계상 법령의 체계 정당성을 함께 검토함.
- 법령의 주요 내용은 기본계획의 수립, 문화다양성위원회, 실태조사, 연차보고, 국가보고서, 각종 지원정책, 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이 주요 내용임.

### 3. 입법평가의 범위

#### ● 규범의 체계 분석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은 문화다양성협약의 집행법 성격이 있어 동 협약의 이행에 적절한지를 평가함.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은 다문화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및 「다문화가족 지원법」과 관계에 있어 체계정당성이 지적되고 있어 세 법률 간의 관계를 평가할 필요가 있음.

#### ● 규범의 효과성 분석(입법 목적의 달성 정도)

- 입법 목적의 달성 여부로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된 목적을 얼마나 달성했는지 평가함.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사회구성원들의 문화다양성 또는 관련 인권 보장이 증진되었는지를 검토함.

#### ● 입법의 사회문화적 영향

- 입법목적 달성 여부에 있어 동법의 제정으로 인한 정치, 경제, 행정, 사회문화적 영향을 분석할 수 있겠음.
- 이해관계자의 의견은 별도로 청취하지 않고 선행연구를 통해 전문가의 견해나 언론자료를 필요에 따라 활용하기로 함.

## II. 분석 대상 법률 개관



### 1. 분석대상 법률: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 ● 제정 목적

-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법률안은 제19대 국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였음.
- 2012년 12월 4일 윤관석 의원 등 23인이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902911)을 제안하였고, 2013년 12월 10일 강창일 의원 등 10인이 「다문화사회의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1908525)을 제안하였음.
- 두 법안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다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2014년 5월 2일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제안되어 가결됨으로써 대안반영폐기 되었음.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2014년 5월 2일 가결되었고, 5월 28일 공포되어 (법률 제12691호)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되었음.
- 법률의 제정 목적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이행을 위하여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것”임.

#### ● 법률의 주요 개념

- “문화다양성”: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 간 그리고 집단과 사회 내에 전하여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며, 그 수단과 기법에 관계없이 인류의 문화유산이 표현, 진흥, 전달되는 데에

사용되는 방법의 다양성과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 방식 등에서의 다양성을 포함함.

- “문화적 표현”: 개인, 집단, 사회의 창의성에서 비롯된 표현으로서 문화적 정체성에서 유래하거나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상징적 의미, 예술적 영역 및 문화적 가치를 지니는 것을 말함.

### ● 법률 적용 대상

- 문화다양성법에서는 외국인 또는 재한외국인, 다문화 등의 용어가 등장하지 않고, ‘사회구성원’이 등장함.
- “제4조(사회구성원의 권리와 책무) 모든 사회구성원은 문화적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가지며, 다른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다만, 제11조 제1항에서 “정부는 문화다양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1일을 문화다양성의 날로 하고, 문화다양성의 날부터 1주간을 문화다양성 주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국민’이 법률 적용 대상으로 등장하고 있음.

## 2. 입법 배경

### ● 문화다양성 논의 배경

- 문화다양성의 의의
  - 우리나라는 전통문화의 보호를 정부 수립 이후 관심을 가졌으나, 경제개발과 함께 본격적인 보존 정책을 실시하였다고 할 수 있음.
  - 유네스코는 문화적 권리에 관하여 국가의 문화정체성과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것을 지지하면서도 소수 민족의 언어와 관습, 문화유산, 전통적 지식의 보호를 주장함.
  - 문화권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근거하기도 함.
  - 전통문화의 보호는 민족적 관점이 투영된 것이 사실이지만 세계적인 차원에서 소수민족의 문화유산 보호는 전지구적 관점에서 문화다양성으로 인식되기도 함.
  - 문화다양성은 각국의 문화적 자원이 다양하게 보존되는 기회를 주어야 전 세계적 민주화, 지속가능한 사회가 실현된다는 믿음에 기반함.

- WTO 체제와 문화다양성 협약 체제

- 우리나라는 세계화에 발맞추어 GATT/WTO 체제에 자연스럽게 편입되어 왔는데, GATT/WTO의 문화 영역의 논의는 주로 시청각 서비스의 개방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음.
- 자유무역 체제 자체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논리, 상품논리라면, 문화다양성 협약 체제는 자본주의에서 문화를 제외하지는 문화논리라고 할 수 있음.
- GATT/WTO 체제는 글로벌 경제에서 상품 교역에 관한 완전 개방을 주장하는 반면, 문화다양성 협약은 각국 혹은 민족의 고유한 문화주권과 문화권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GATT/WTO 체제에 편입되면서도 문화다양성 협약을 지지하는 연대가 공존하는 사회운동이 일기도 하였음.
- 우리나라는 극장에서 상영되는 영화 중 국산영화의 의무상영일수를 정하는 제도로써 「영화진흥법」에 스크린쿼터의 근거를 두고 시행하여 왔으나, 동 제도의 확대와 축소가 반복되기도 하였음.

- 우리나라 문화다양성 정책의 딜레마)

- 표현의 자유나 예술의 자유가 종종 침해되는 상황에서 문화권, 문화다양성의 보장 요구가 혼재하는 상황임.
- 전통문화의 보존과 관리가 중시되면서 다문화사회 도래에 따른 이주민 문화의 보호가 요청됨.
-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따라 소수자(장애인, 청소년, 노인 등) 문화에 대한 관심도 요청됨.
- 문화의 공공성을 지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불충분한 것이 현실임.

-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 「다문화사회의 문화적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sup>2)</sup>

- 최근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사회의 현상이 증가하고 외국인 정책에 대한 국내외적 변화요구가 있는 상황이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에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이를 통해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기반이 부족하며, 특히 다문화사회를 지향하는 문화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 다문화사회의 도래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문화다양성 진흥 정책을 마련

1) 이동연, “한국사회 문화다양성의 현실과 대안적 문화정책 구상”, 「문화다양성과 문화권: 한국사회의 현주소와 정책적 과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6. 5. 19.

2) 문화체육관광부, 2008. 7. 18.

하도록 하고, 시민사회와 사회구성원 전체가 다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문화적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이에 문화적 다양성에 입각한 표현과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구성원 간의 상호 신뢰와 이해 속에서 문화의 다양성과 관용, 협력을 존중하는 문화공토를 조성하며, 모든 국민을 포용하고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문화정책을 펼침으로써 사회적 결속, 시민사회의 역동성과 평화를 보장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 ● 관련 법안의 제안 이유

- 2012년 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안」

- 국제사회의 흐름으로 UNESCO는 2001년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 후 이에 기반 하여 2005년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 협약」을 채택하였고, 대한민국은 동 협약의 110번째 비준국가로서 2010년 7월 같은 협약이 국내에 정식 발효되었음.
- 이에 대한민국이 협약의 당사국으로서 국제협약이 요구하는 권리와 의무를 적극 반영하여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이주민 140만 시대, 개방형 통상국가 등 한국사회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한 문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 간 공존과 사회통합을 이루고 국가창조력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이에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수용성을 높여 새로운 문화 창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2013년 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다문화사회의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법률안」

- 다문화사회의 도래에 따라 사회통합을 위한 여러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은 다문화 가족과 결혼이민자 등을 대상으로 한 한국사회의 정착 및 복지에 관한 정책이 주를 이루어 우리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시키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
- 또한 국회에서 지난 2010년 2월 유네스코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을 비준·발효한 바 있어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국내법의 준비가 필요함.
- 이에 우리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진전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이주민 중심의 정책에서 탈피하고, 사회구성원의 문화다양성 증진을 통해 사회통합과 정체성 확립을 이룰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문화다양성협약의 이행<sup>3)</sup>

- 문화다양성협약 채택과정
  - 1995년 우리의 창조적 다양성 보고서
  - 1997년 문화적 권리에 대한 초안 선언
  - 2001년 유네스코 문화다양성선언(파리)(제31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
  - 2003년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제32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
  - 2005년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약(파리)(제33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
- 문화다양성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
  - 문화다양성선언은 총 12개의 조문과 함께 20개의 유네스코 문화다양성선언의 실천을 위한 실행 계획의 목적이 포함됨.

〈표 1〉 문화다양성선언 내용

정체성, 다양성, 그리고 다원주의	제1조	문화다양성: 인류의 공동 유산
	제2조	문화다양성에서 문화 다원주의로
	제3조	발전을 위한 요소로서의 문화다양성
문화다양성과 인권	제4조	문화다양성을 보장하는 인권
	제5조	문화다양성을 위한 환경으로서의 문화권
	제6조	모든 이를 위한 문화다양성
문화다양성과 창의성	제7조	창의성의 원천으로서의 문화 유산
	제8조	특정한 유형으로서의 문화 상품과 서비스의 특수성
	제9조	창의성의 촉매로서의 문화정책
문화다양성과 국제연대	제10조	세계적 창조와 배포를 위한 역량 강화
	제11조	공공 분야, 민간 분야, 시민 사회와의 협력 강화
	제12조	유네스코의 역할
첨부		유네스코 문화다양성선언의 실천을 위한 실행 계획

- 문화다양성 협약
  - 문화다양성협약은 7개 장, 총 35개로 규정.

3) 박병도 · 김병준, “문화다양성과 국제법-문화다양성협약을 중심으로-”, 2009.

〈표 2〉 문화다양성협약 내용

구 분		주요내용
I 목적과 지침	목적 (제1조)	문화가 번성하고 서로 호혜적인 방식으로 자유롭게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국내적·국제적 차원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지침 (제2조)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 원칙 주권 원칙 모든 문화에 대한 동등한 존엄성 인정과 존중 원칙 국제적 연대와 협력 원칙 개발의 경제적, 문화적 측면의 상호 보완성 원칙 지속가능한 개발 원칙 공평한 접근 원칙 개방과 균형 원칙
II 적용범위	적용범위 (제3조)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과 관련하여 당사국이 채택한 정책과 조치
III 정의	정의 (제4조)	문화다양성 문화콘텐츠 문화적 표현 문화활동, 문화상품 및 문화서비스 문화산업 문화정책과 문화조치 보호 상호문화성
IV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	일반규칙 (제5조)	문화다양성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의 목적에 따른 문화정책의 입안 및 실행
	국가적 수준 (제6조)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문화다양성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조치
	제7조	문화적 표현의 증진을 위한 조치
	제8조	문화적 표현의 보호를 위한 조치
	제10조	교육과 공공인식
V 다른 문서와의 관계	제11조	시민사회의 참여
	제20조	다른 조약과의 관계: 상호지원성, 보완성 및 비종속성
VI 협약의 기관	제21조	국제적 협의와 조정
	제22조~ 제24조	협약의 기관

구 분		주요내용
Ⅶ 최종조항	제25조~ 제35조	최종조항
부속서		조정절차(총 6개조)

- 문화다양성의 의미: “문화다양성’이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표현되는 다양한 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표현들은 집단과 사회의 내부에서 그리고 집단과 사회 사이에서 전승된다. 문화다양성은 인류의 문화 유산이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통해 표현되고, 증대되며, 전승되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사용된 방법과 기술에 관계없이 다양한 양식의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배포 및 향유를 통해서도 명확하게 나타난다.”
- 문화 콘텐츠: “문화 콘텐츠’란 문화적 정체성에서 유래하거나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상징적 의미, 예술적 차원 및 문화적 가치를 말한다.”
- 문화적 표현: “문화적 표현’이란 개인, 집단, 사회의 창의성에서 귀결되는 표현으로서 문화 콘텐츠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
- 문화활동, 문화상품 및 문화서비스: “문화활동, 문화상품 및 문화서비스’란 그 당시 특성, 용도 또는 목적을 고려할 때 그 상업적 가치에 관계없이 문화적 표현을 구체화하거나 전달하는 활동, 상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문화활동은 그 자체가 목적일 수도 있고, 문화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에 기여할 수도 있다.”
- 문화산업: “문화산업’이란 위의 제4항에서 정의한 문화상품 또는 문화서비스를 생산, 배포하는 산업을 말한다.”
- 문화정책과 문화조치: “문화정책과 문화조치’란 지방, 국가, 지역 또는 국제적 수준에서 문화 그 자체에 초점이 맞춰진 또는 문화활동, 문화상품 및 문화서비스의 창작, 생산, 보급, 배포 및 접근 등을 포함한 개인, 집단 또는 사회의 문화적 표현에 대하여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도록 입안된 문화 관련 정책과 조치를 말한다.”
- 보호: “보호’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의 보존, 보호 및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조치를 채택하는 것을 말한다. ‘보호하다’란 이러한 조치를 채택하는 것을 말한다.”
- 상호문화성: “상호문화성’이란 대화와 상호존중을 통한 다양한 문화의 존재와 공평한 상호작용 그리고 공유된 문화적 표현을 생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

### 3. 법률 제정 경과

- 윤관석 의원안과 강창일 의원안의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표 3〉 윤관석 의원안과 강창일 의원안의 내용 비교

윤관석 의원안	강창일 의원안	비고
제1조 목적에서 문화다양성협약,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 새로운 문화창조 등 규정	제1조 협약 언급 없이 문화다양성 기반 사회통합과 새로운 문화창조 언급	
제2조 정의에서 문화다양성, 문화적 표현 규정	제2조 다문화사회, 문화다양성, 문화다양성콘텐츠를 추상적으로 정의	다문화사회 정의에 대한 부담(다문화사회보다 문화다양성이 넓은 개념) 협약의 정의는 윤관석 의원안에 충실히 반영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사회구성원의 권리와 책무	제5조 사회구성원의 권리와 책무	
제6조 기본계획은 3년마다 수립	제6조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	국가보고서 제출 주기 4년 고려 필요
제7조 국무총리 소속 문화다양성위원회 설치	제7조 국무총리 소속 문화다양성위원회 설치	
제8조 실태조사	제8조 실태조사 및 연차보고	
제9조 연차보고		
제10조 국가보고서 작성	제9조 국가보고서	
제11조 문화다양성의 날 5월 21일 + 문화다양성 주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상 세계인의 날은 5월 20일
제12조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제10조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제13조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제11조 문화 간 상호교류 지원 제12조 문화다양성 증진 교육	
제14조 전문인력 양성	제13조 전문인력 양성	

### ● 다문화사회와 문화다양성

- 다문화사회: 대한민국 국적 출생자와 제1호에 따른 이주민 등 다양한 국적 출생자로 구성된 사회로서 대한민국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의 고유한 언어 및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제19대 국회 2012년 김명연 의원 대표 발의 다문화사회기본법안의 정의 규정 참조)
- 문화다양성: 문화다양성은 문화다양성협약과 문화다양성법에서 정의되고 있고 이에 따르면 다문화보다 넓은 개념으로 볼 수 있으나, 다문화 개념도 법률이 아닌 학계에서는 민족, 인종, 국적, 이주 개념에 한정하지 않고 최근에는 사회적 약자를 폭넓게 포괄하고 있어 양자의 관계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음.

### ● 이주민, 재한외국인, 사회구성원 등

- “이주민”이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재한외국인 및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국적을 취득한 자(제19대 국회 2012년 김명연 의원 대표 발의 다문화사회기본법안의 정의 규정 참조)
- 재한외국인: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1호)
- 사회구성원: 정의 규정 없음

## 4. 법령의 주요 내용

### ● 문화다양성법

- 이 법은 유네스코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 “문화다양성”이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 간 그리고 집단과 사회 내에 전해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 수단과 기법에 상관없이 인류의 문화유산이 표현, 진흥, 전달되는 데에 사용되는 방법의 다양성과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 등의 양식에서의 다양성을 포함 함(제2조).

- 모든 사회구성원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자유와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다른 구성원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제4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회 전반의 문화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4년마다 문화다양성증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6조).
-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이행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문화다양성위원회를 둠(제7조).
- 정부는 유네스코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제9조에 따른 국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유네스코에 제출하도록 함(제10조).
- 문화다양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1일을 문화다양성의 날로 하고, 문화다양성의 날부터 1주간을 문화다양성 주간으로 함(제11조).

〈표 4〉 문화다양성법 주요 내용

구 분		주요내용	
목적과 정의	목적 (제1조)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	
	정의 (제2조)	“문화다양성”과 “문화적 표현”에 대한 정의	
기반	책무 (제3조) (제4조)	국가	· 문화다양성을 위한 시책을 강구 · 문화예술 활동은 권장·보호·육성 및 자원 마련 · 국가 간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 문화적 차이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참여에 차별 금지
		사회 구성원	· 모든 사회구성원은 문화적 표현의 자유와 권리 향유 · 다른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
	기본계획 (제6조)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	
	위원회 (제7조)	국무총리 소속의 문화다양성 위원회 설치·운영	

구 분		주요내용
조사 및 보고	실태조사 (제8조)	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 및 그 결과의 공표
	연차보고 (제2조)	문화다양성 정책의 추진현황 및 세부이행 평가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제출
	국가보고서 작성 (제10조)	문화다양성협약에 따라 4년마다 국가보고서 작성
주요 정책	문화다양성의 날 (제11조)	매년 5월 21일 및 해당 주간을 문화다양성 주간으로 정함
	지원 (제12조)	문화다양성을 위한 문화예술, 학술, 체육, 문화산업 등에 대한 지원, 문화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규정
	교육 (제13조)	사회구성원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을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
	전문인력 양성 (제14조)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과 지원

## ● 동법 시행령

-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제2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부문별 계획을 종합하여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문화다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문화다양성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4조부터 제7조까지)
  - 문화다양성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7명 이내의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정책 관련 전문가로 하는 등 문화다양성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문화다양성 실태조사(제8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를 실시하되, 문화다양

성 관련 연구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제10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문화의 공존과 조화를 위한 활동이나 다양한 문화의 표현 및 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활동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 동법 시행규칙

-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등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관련 정보의 수집,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재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5. 관련 조례의 제정

### ● 문화다양성 조례

- 문화다양성법이 제정되고 전라남도를 시작으로 광주, 목포, 경기도, 부산, 서울, 제주도, 충청북도, 서울시 구로구, 익산시, 서울시 강북구에서 조례가 제정됨(2018년 2월 현재).

### ● 문화다양성교육 조례

-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외에 「경기도교육청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로 교육에 관한 조례도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 경상남도교육청에서도 조례가 제정되어 현재 문화다양성 관련 교육 조례는 경기도교육청과 경상남도교육청 두 곳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 6. 법률 개정 수요

- 법률 제정 이후 개정 사항 없음
- 법률개정안은 설훈 의원 대표발의로 개정안이 1건 제안되어 있고(2017년 9월 1일),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은 매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의 추진현황 및 세부이행 평가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정책목적의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관계 기관의 자료 협조를 바탕으로 세부이행 평가결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는 환류절차(Feed-back) 등이 필요하나, 현행법은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은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의 추진현황 및 세부이행 평가결과에 관한 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 Ⅲ . 입법평가의 쟁점 분석



### 1. 서설

#### ● 쟁점의 특성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은 유네스코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이행을 위하여 제정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별 조항에 대한 개정 수요가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임.
- 다문화사회 도래 이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다문화가족 지원법」, 「난민법」 등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법률의 체계정당성을 위해 법률간 모순 저축을 최대한 피했기 때문에 타 법령과 충돌되는 것 역시 많지 않음.
- 다만 문화다양성의 날, 전문인력 규정 등은 다른 법률과 중복 소지가 없지 않음.
- 이 법률은 이주민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다문화사회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외국인 정책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이 현실이고, 특히 이주민들의 문화적 표현에 대한 지원이 중요한 정책이 될 수 있음.

#### ● 규범의 체계성 분석

-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의 이행 수준에 적합한 법률인지 동 협약과 법률을 상호 비교 분석함.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다문화가족 지원법」, 「문화기본법」 등의 입법 목적, 주요 개념, 집행 과정 중에서의 정책 중복 가능성 등을 검토함.
- 문화다양성 관련 조례와 체계성을 검토함.

- 즉 협약, 타 법률, 조례와의 체계성을 검토하기로 함.

### ● 규범의 효과성 분석

- 이 법 제정에 따라 문화다양성 수준이 향상되었는지 평가할 필요성이 제기됨.
- 이 법 제정에 따라 협약 이행에 긍정적 영향은 무엇인지 평가함.
- 이 법 제정에 따라 문화다양성 정책이 체계화 되었는지 평가함.
- 

### ● 기타

- 그 외에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의 시행으로 규제영향심사, 부패영향심사 등이 제기될 요소는 없다고 보임.

## 2. 쟁점의 정리

### ● 규범의 체계성 분석

- 문화다양성 협약과 문화다양성법의 관계 평가
  - 협약의 이행 수준
  - 협약의 내용 체계와 법률의 체계 비교
- 헌법과 문화다양성법의 관계 평가
  - 헌법상 문화국가의 원리
  - 헌법재판소 결정에 나타난 문화다양성의 의미
- 관련 법률들과의 체계정당성
  -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과의 관계
  - 「다문화가족 지원법」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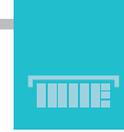
### ● 규범의 효과성 분석

- 문화다양성 증진 정책 및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모니터링과의 관계에 따라 문화다양성법이 문화다양성 정책을 충분히 규정하고 있는지 검토함.
- 문화다양성법 입법 목적의 실현 정도를 측정하기는 쉽지 않으나, 동법이 지향하는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이라는 관점에서 평가를 시도함.

### ● 입법대안의 제시

-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의 정비방안을 제시함.

## IV . 법체계 분석



### 1. 문화다양성 협약과의 관계

#### ● 문화다양성 협약 내용 중 국가 권한 및 의무<sup>4)</sup>

- 전문
-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
  -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문화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주권적 권리
- 국가적 수준에서 당사국 권리(제6조)
  - 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규제 조치
  - 나. 문화활동, 문화상품 및 문화서비스에 사용되는 언어에 관련된 규정을 포함하여, 자국 영토 내에서 국내 문화활동, 문화상품 및 문화서비스의 창작, 생산, 보급, 배포 및 향유를 위하여 이용 가능한 모든 기회를 국내 문화활동, 문화상품 및 문화서비스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조치
  - 다. 비공식 부문에서 이루어지는 국내 독립 문화산업과 활동이 문화활동, 문화상품 및 문화서비스의 생산, 보급 및 배포 수단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 라. 공공 재정지원 제공을 위한 조치
  - 마. 비영리 조직, 공공기관, 민간 기관, 그리고 예술가와 그 밖의 문화전문가들이 생각, 문화적 표현, 문

4) 세계인권선언, 자유권규약, 사회권규약 등에서는 인종, 민족 등에 다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아동권리협약 제30조에서는 인종적·종교적·언어적 소수자에 속하는 아동의 고유문화 향유, 고유 종교 신앙·실천, 고유 언어 사용을 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

화활동, 문화상품 및 문화서비스를 자유롭게 교환하고 유통시킬 수 있도록 개발하고 증진하며, 또한 그들의 활동에 창의적이고 기업가적 정신을 고무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조치

- 바. 적절한 경우, 공공기관을 설립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치
- 사. 예술가 및 그 밖의 문화적 표현의 창작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양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치
- 아. 공공 서비스 방송 활용을 포함한 매체의 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치
- 문화적 표현의 증진을 위한 조치(제7조)
  - 가. 소수자와 토착민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집단과 여성의 특수한 상황이나 요구를 충분히 고려하여, 자국의 문화적 표현의 창조, 생산, 보급, 배포 및 접근
  - 나. 자국 영토 내 그리고 세계 다른 나라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에의 접근
- 교육과 공공인식(제10조)
  - 교육 및 공공인식제고 프로그램을 통하여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장려하고 증진
- 시민사회의 참여(제11조)
- 국제협력의 증진(제12조)

### ● 문화다양성법의 평가

- 문화다양성 협약상 문화다양성 개념의 존중

〈표 5〉 협약과 법률의 정의 규정 비교

협약	법률
<p>“문화다양성”이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표현되는 다양한 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표현들은 집단과 사회의 내부에서 그리고 집단과 사회 사이에서 전승된다. 문화다양성은 인류의 문화유산이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통해 표현되고, 증대되며, 전승되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사용된 방법과 기술에 관계없이 다양한 양식의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배포 및 향유를 통해서도 명확하게 나타난다.</p>	<p>“문화다양성”이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 간 그리고 집단과 사회 내에 전하여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며, 그 수단과 기법에 관계없이 인류의 문화유산이 표현, 진흥, 전달되는 데에 사용되는 방법의 다양성과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 방식 등에서의 다양성을 포함한다.</p>
<p>“문화 콘텐츠”란 문화적 정체성에서 유래하거나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상징적 의미, 예술적 차원 및 문화적 가치를 말한다.</p> <p>“문화적 표현”이란 개인, 집단, 사회의 창의성에서 귀결되는 표현으로서 문화 콘텐츠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p>	<p>“문화적 표현”이란 개인, 집단, 사회의 창의성에서 비롯된 표현으로서 문화적 정체성에서 유래하거나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상징적 의미, 예술적 영역 및 문화적 가치를 지니는 것을 말한다.</p>

- 문화다양성 기본계획에서 문화다양성 협약에서 규정한 다양한 정책들을 담고 있음
  - 가.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조사·연구
  - 나.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의 발굴 및 보급
  - 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보자료의 제작 및 보급
  - 라. 문화다양성의 증진을 위한 문화시설 조성
  - 마.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인력 양성
  - 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제교류 및 국제기구 협력
- 협약 이행을 위한 구체적 수단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도 규정함
  - 실태조사, 연차보고, 국가보고서 작성 규정
-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 지원 분야: 문화예술, 학술, 체육, 문화산업 등
  - 문화시설을 조성하거나 지원 가능

- 지원 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1. 다양한 문화의 공존과 조화를 위한 활동, 2. 다양한 문화의 표현 및 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활동”을 위한 것이어야 함.
- 문화다양성 문화시설을 예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지정제도를 둬으로써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한계

- 소수자에 대한 명확한 규정 결여
- 지역문화의 경우 별도의 입법으로 운영
- 시민참여에 관한 규정 결여
- 전문인력 중심의 운영임에도 전문인력 개념 불명확
- 문화다양성과 공공성의 관계 설정 미흡

## 2. 헌법과의 관계

### ● 헌법상 문화국가의 원리 및 문화공동체의 보장

– 문화국가의 원리

- 우리나라는 건국헌법 이래 문화국가의 원리를 헌법의 기본원리로 채택하고 있다. 우리 현행 헌법은 전문에서 “문화의……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할 것을 선언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에게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헌법 제9조). 또한 헌법은 문화국가를 실현하기 위하여 보장되어야 할 정신적 기본권으로 양심과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개별성·고유성·다양성으로 표현되는 문화는 사회의 자율영역을 바탕으로 한다고 할 것이고, 이들 기본권은 견해와 사상의 다양성을 그 본질로 하는 문화국가 원리의 불가결의 조건이라고 할 것이다. 문화국가원리는 국가의 문화국가실현에 관한 과제 또는 책임을 통하여 실현되는데, 국가의 문화정책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과거 국가절대주의사상의 국가관이 지배하던 시대에는 국가의 적극적인 문화간섭정책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국가가 어떤 문화현상에 대하여도 이를 선호하거나, 우대하는 경향을 보이지 않는 불편부당의 원칙이 가장 바람직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오늘날 문화국가에서의 문

화정책은 그 초점이 문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가 생겨날 수 있는 문화풍토를 조성하는 데 두어야 한다. (헌재 2004. 5. 27. 2003헌가1등)

- 헌법개정안(2018년 3월 26일 대통령 제안)

- 문화국가 및 다문화사회 지향안 제9조 “제9조 국가는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증진하고, 전통문화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사회변화와 다문화·다민족 시대를 맞아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 창달 노력 의무도 그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시대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되어 온 ‘민족문화의 창달’ 대신, 국가가 문화의 자율성 및 다양성을 증진할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전통문화는 발전적으로 계승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함.

- 대통령 선서내용 수정안 제73조 “제73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지키며 조국의 평화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 맡은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통령 취임 시의 선서내용 중 ‘민족문화의 창달’을 ‘문화의 창달’로 변경함으로써 민족문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함.

● 헌법재판소의 표준어 규정 위헌확인 결정(헌재 2009. 5. 28. 2006헌마618)

- 결정요지

1. 이 사건 표준어 규정은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인바, 이는 표준어의 개념을 정의하는 조항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법적 효과를 갖고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들의 자유나 권리를 금지·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 또한, 표준어의 정의는 서울지역어 가운데 교육을 받은 사람이 구사하는 언어라는 의미일 뿐 그 표준어를 쓰는지 여부와 교양이 있는 사람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표준어 규정은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초·중등교육 과정에 지역어 보전 및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의 교과를 편성하지 아니한 부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헌법 규범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초·중등교육 과정에 지역어 보전 및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기

준과 내용의 교과를 편성할 구체적인 의무'가 나온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헌법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작위의무가 있다고 명시한 바 없고,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 제31조(교육을 받을 권리), 제9조(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할 국가의무)로부터도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할 수 없다.

- 3. 이 사건 법률조항들 중 공문서의 작성에 관하여 규율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면, 국민들은 공공기관이 작성하는 공문서에 사용되는 언어의 통일성에 대하여 일정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 할 것이고, 이는 공문서에 사용되는 국어가 표준어로 통일되지 않는 경우 의사소통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불가결한 규율이다.
-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들 중 교과용 도서에 관하여 규율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면, 교과용 도서의 경우 각기 다른 지방의 교과서를 각기 다른 지역의 방언으로 제작할 경우 각 지역의 방언을 사용하는 학생들은 표준어를 체계적으로 배울 기회를 상실하게 되고, 국가 공동체 구성원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규율이다.
- 반대의견
  -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서울말'이라고 하는 기준만으로써 표준어의 범위를 결정하고 이 표준어만을 교과서와 공문서에 쓰도록 강제하는 것은 청구인을 비롯한 국민들의 언어생활에 관한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 지역어 가운데 특정 지역어를 표준어로 정하는 경우 그 지역 이외 지역의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언어생활에 상당한 위축을 가져온다. 국어의 표준화와 교육의 질적·양적인 성장, 매스컴의 발달 등을 통하여 오늘날 전국적인 방언 차이는 국민적 의사소통에 별다른 어려움을 주지 않을 만큼 약화되었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 현재의 언어 환경에 비추어 볼 때, 과거의 기준을 엄격하게 고수함으로써 표준어의 기준이 보수적이고 타성적인 규범으로서 작용하도록 한다면 오히려 표준어와 우리 언어의 발달을 저해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 서울 이외 지방의 각 지역어도 각 해당 지역 주민들의 역사적·문화적·정서적인 창조물일 뿐만 아니라 누대에 걸쳐 전승된 우리 모두의 문화유산이다. 이와 같은 성격을 갖는 각 지역의 지역어는 해당 지역어 사용자들뿐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의 정서와 감정표현에 가장 적합한 수단이기도 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 지역어 모두를 표준어의 범위에서 배제해 해당지역민에게 문화적 박탈감을 주는 것은 표준어 선정의 합리적 방법이라 할 수 없다.

- 서울지역의 언어라고 하는 기준은 표준어의 범위로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기준이 되는 범위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좁고 획일적인 기준으로서, 국민의 문화적 통합에 장애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이 기준은 서울 이외 지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합리적 기준이 될 수 없다.

- 평가

- 현행 헌법이 문화다양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문화국가의 원리는 본질적으로 문화다양성을 긍정.
- 전통문화 보호의 이념이 민족적 관점에서 출발한 것이 사실이지만, 문화다양성협약이 각 국가, 민족의 전통문화 보호를 배제하는 것이 아님.
- 전통문화의 존중과 소수문화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책 입안 가능.

### 3. 타 법령과의 관계

#### ● 다문화사회 관련 법률 제정 목적 비교

- 법률 제정 목적 비교

〈표 6〉 다문화사회 관련 입법 제정 목적 비교

법률명	제정 목적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2003년 제정)	이 법은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2007년 제정)	이 법은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 (2008년 제정)	이 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이행을 위하여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특징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국제협약이 다수 존재함에도 국제인권법 수준에 이르지 못한 반면, 문화다양성법은 우리가 가입한 문화다양성 협약에 기초함.
- 본격적인 다문화사회 도래 이후 제정된 법률들은 사회통합을 제정 목적으로 명시.
- 다문화사회 관련 노동 분야, 복지 분야, 문화 분야에 각각 독립 입법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음.
- 법률 제정 당시 중복입법을 피하기 위한 노력 평가.
- 다른 법률들은 정책 대상이 외국인근로자, 재한외국인, 다문화가족 등으로 분명한 반면, 문화다양성법은 소수자 또는 정책 대상이 명확하지 않는 특징이 있음.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의 관계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정책 대상을 재한외국인 특히 합법적 체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재한외국인 등의 인권 옹호를 규정(제10조)하고 있어, 재한외국인의 차별 방지와 인권 옹호는 문화적 권리에도 적용이 될 것이나, 문화적 권리는 기본권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권리라고 할 수 있음.
- 재한외국인 사회적응 지원(제11조) 한국 사회 적응에 필요한 교육 등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 법이 지향하는 다문화사회 혹은 사회통합 모델은 문화다양성 존중 보다는 한국사회 중심의 동화주의라는 비판이 많음.
-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제12조)에서도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명시.
-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제18조) 규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역사·문화 및 제도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불합리한 제도의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민과 재한외국인의 대등한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세계인의 날(제19조)을 매년 5월 20일로 규정하고,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의 기간을 세계인주간으로 함.
  - ‘세계인’의 개념이 불명확 함
  - 문화다양성법은 매년 5월 21일을 문화다양성의 날로 하고, 문화다양성의 날부터 1주일을 문화다양성 주간으로 규정함.

세계인 주간과 문화다양성 주간이 사실상 중복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 다문화가족 지원법과의 관계

- 다문화가족 지원법은 국민,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등을 기본 개념 또는 정책 대상으로 하고 있음.
- 다문화가족 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 다문화가족 지원법에서는 2008년 제정법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규정하고 있음
  - 비록 이해의 대상을 다문화가족에 한정하고 있고, 다문화교육에 있어 '이해'를 강조하는 한계는 있으나, 문화적 다양성을 언급한 최초의 입법이라고 할 수 있음.
  - 현재의 다문화가족 지원법에서는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와 홍보에 있어 방송을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sup>5)</sup>.

#### 5)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4., 2013. 3. 22.>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함에 있어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1.>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지상파방송사업자"라 한다)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2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1.>
- ④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제2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으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1.>
- ⑤ 교육부장관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 중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의 교육현황 및 아동·청소년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4., 2013. 3. 23., 2015. 12. 1., 2017. 3. 21.>

〈표 7〉 다문화가족 지원법 상 다문화 이해교육 규정의 변천

<p>다문화가족 지원법 [법률 제8937호, 2008.3.21., 제정]</p>	<p>다문화가족 지원법 [법률 제10534호, 2011.4.4., 일부개정]</p>	<p>다문화가족지원법 [법률 제15204호, 2017. 12. 12., 일부개정]</p>
<p>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제5조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p> <p>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4.〉</p> <p>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4.〉</p>	<p>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p> <p>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4., 2013. 3. 22.〉</p> <p>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함에 있어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1.〉</p> <p>③ 여성가족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지상파방송사업자"라 한다)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2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1.〉</p> <p>④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제2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으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1.〉</p> <p>⑤ 교육부장관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중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의 교육현황 및 아동·청소년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4., 2013. 3. 23., 2015. 12. 1., 2017. 3. 21.〉</p> <p>⑥ 교육부장관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 이해교육 관련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12.〉</p>

- 결혼이민자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정보와 한국어교육을 강조함
  - 결혼이민자 등에게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아동·청소년에 대한 학습 및 생활 지도 관련 정보를 포함한다)의 제공과,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훈련 및 언어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교육 등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제6조).
- 다문화가족의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서비스를 규정함
  - 다문화가족이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 생활교육 등을 추진하되, 이 경우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제7조).
-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규정(제11조)
  -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는 이주민에 대한 정보 제공, 사회적응 등에 기여하는 규정이나 문화적 삶을 표현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평가
  - 다문화가족에게 한정됨.
  - 문화다양성을 강조하는 다문화 이해교육을 규정하고 있어, 다문화교육과 문화다양성 교육 사이에 차별성이 적은 것으로 인식되도록 함.
  - 다문화가족을 위한 방송, 다국어 서비스 제공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활성화되어 문화다양성 기관의 성장을 막을 가능성도 있음.
  -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전문인력은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상 다문화사회 전문가, 문화다양성법 상 전문 인력과 중복될 소지가 높음.
  - 사회통합 용어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과 동화주의에 가깝다는 비판도 있음.
  -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강조한 나머지 자칫 다문화가족을 객체화할 위험성이 있음.

## 4. 법률 내부의 상충 또는 경합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지원 정책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지원정책이 많다보니 관 주도 중심의 정책이 설정되고 있으며 이는 문화적 속성과는 거리가 멀 수 있음.
- 부처간 다문화, 문화다양성, 이주민 정책이 독자적으로 수립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로 이주민 또는 다문화가족 정책으로 이해되어 중복집행되고 있음.

### ● 문화다양성과 다문화 용어의 혼선

- 관련 입법과 다문화사회 현상의 심화에 따라 문화다양성을 다문화로 좁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으나, 문화다양성의 분류체계와 내용은 다음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문화보다 상위개념이라고 할 수 있고 다양한 국내 문화환경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sup>6)</sup>.

<표 8> 문화다양성 분류체계(Dimensions of Cultural Diversity)의 내용 구성

구분	분류정책	내용구성
기본 영역 (1차적 범주)	민족(Ethnicity;Race)	한국 사회에 이주한 타민족, 타인종 집단으로 외국인근로자, 외국인 유학생, 귀화자 및 결혼 이주자 등
	국적(Nationality)	국내 이주한 집단으로 타국적 소지자로, 외국인 외 외국적 동포, 북한에서 이탈한 새터민 포함
	성별(Gender)	성별에 따라 집단별로 공유되고, 창조되는 문화
	장애문화(Diability)	신체 기능에 장애가 있거나 정신 활동에 결함이 있어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
	성적취향 (Sexual Orientation)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성적 정체성이 다른 집단으로,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젠더퀴어 등 포함
	세대(Age)	연령에 따라 세대별로 형성하는 집단문화로 아동문화, 청소년문화, 노인 문화 등

6) 김 면, 문화다양성 정책현황 및 발전방안 연구, 2017.

구분	분류정책	내용구성
환경 영역 (2차적 범주)	종교(Religion)	다양한 신앙, 교리 및 영적 생활을 수행하는 집단들로,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원불교 등 포함
	소득(Income)	각의 경제활동을 통하여 상대적 소득 수준의 격차와 분포에 따라 형성된 생활문화양식
	혼인(Marital Status)	남녀 간 혼인을 이루거나 결혼을 하지 않고 독립가구를 이루는 등 다양한 가족형태를 보임
	전통(Tradition)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전해 내려오는 민족의 고유 문화
	지역(Geographic Location)	각 지역이 가진 특색 있는 고유성을 가진 문화
	예술취향(Art)	기존 문화예술 장르 및 주류 예술을 벗어나 다양한 예술형태와 취향을 표현하며, 순수문화, 대안문화, 독립문화, 인디문화 등 포함

#### ● 무형문화유산, 문화산업, 지역문화 관련 법령과의 경합

- 문화다양성협약은 무형문화유산을 배제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무형문화유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고 있음.
- 다만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보호가 민족적인 것일 수도 있으나, 세계적 차원에서 그리고 지역적 차원에서 다양성을 내포하고 있음도 염두에 두어야 함.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을 통해서도 문화다양성 정책의 근거를 도출할 수 있음.
-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어 있어 지역 간 문화다양성 정책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문화다양성법은 구체적 정책 규정이 미흡한 것으로 보임.

## V . 입법목적 및 사회적 영향 분석



### 1.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 ● 문화다양성협약 이행 모니터링 체계<sup>7)</sup>

〈표 9〉 문화다양성협약 이행 모니터링 체계

목표	분야
지속가능한 문화 거버넌스 체계 지원	문화정책
	공공서비스 미디어
	디지털 환경
	시민사회와의 협력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균형적임 흐름 및 예술가와 문화 전문가의 이동성 증대	예술가와 문화 전문가들의 이동성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흐름
	조약 및 협정
지속가능한 발전 체제에 문화 통합	국가 차원의 지속 가능한 개발 정책 및 계획
	국제 지속 가능한 개발 프로그램
인권과 기본적 자유 증진	양성평등
	예술적 자유

- 우리나라 문화다양성법에서는 이러한 문화다양성 정책의 구체적 분야를 담고 있지 못함.
- 다만 문화다양성 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일정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됨.

7)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역, (문화다양성 협약 글로벌 리포트) 문화정책의 (재)구성: 발전을 위한 창의성 증진, 2018.

● 우리나라 문화다양성 정책은 대체로 <표 10>과 같이 구체화 될 수 있음<sup>8)</sup>

<표 10> 문화다양성 정책 분류

전통 문화	보호	시대가 지날수록 사라져 가는 문화예술 유산을 기록으로 혹은 보존회 등으로 정책을 통해 전승될 수 있도록 한다.
	홍보	잊혀져가는 문화유산 혹은 유형·무형 문화재를 공연, 축제, 박람회, 놀이 사업 등으로 일반주민과 관광객 등이 다양한 경험을 한다.
	교육	무형문화재 전승과 우수성을 보여주기 위해 제작된 영상 기록물을 통해 원형변질에 대비하고 원형을 보존하는 한편, 일반 주민들에게 교육한다.
	보급 및 계승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에게 전통스토리를 포함한 전통문화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하여 보급하고 계승될 수 있도록 한다.
	박물관	문화다양성 교구재·교육 등을 개발하고 운영하거나 관련 영상 혹은 책자를 제작한 후, 배포하는 사업 등으로 각 기관을 알린다.
예술가 지원	예술가	예술가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보호를 통하여 안정적인 창작여건을 조성한다. 또한 지역의 아마추어 예술동아리에 전문예술가를 파견하는 등의 예술가 교육도 포함한다.
	네트워크 형성	넓게는 문화재단 정책세미나부터 좁게는 소규모예술활동지원까지 다양한 예술가들 혹은 주민들의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문화 산업	문화 산업	문화산업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문화산업의 분야에 따라 환경을 만들어주고, 관련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수한 문화콘텐츠를 찾고 발전하는 것도 포함한다.
이민자 문화 (다문화)	외국인 및 이민자	한국 사회에 있는 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적응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의료, 교육, 방송, 문화, 사회 통합, 보호, 축제 등의 다양한 방면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제일 먼저는 이주민의 한국 사회 통합을 중점으로 하고 있다.
	북한이탈 주민	북한이탈주민의 정서적, 경제적 안정화 화합을 증진하기 위해 가치확산 유형과 공감대 형성 및 갈등해소 유형의 정책 사업, 정책생활 지원을 한다.
	동포	사회통합 측면에서 중국동포의 문화이해와 인식을 개선하고 영주 귀국한 동포들을 위해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한다.

8) 김 면, 앞의 보고서 참조; 한희련, "문화다양성협약에 따른 주요 국가의 정책 비교 연구", 2018

문화 복지	여성	양성평등을 위한 인식 개선을 중점으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대부분의 정책이 인식 개선이지만 여성 안전귀가를 위한 순찰 및 문화 참여 정책도 시행되었다.
	노인	노인들이 문화생활을 하는데 어려움 없이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어르신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활동을 지원한다.
	빈곤 (문화 소외 포함)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정책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 있으며, 지역별로 소외계층이 쉽게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문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동·청소년	각 시도에서는 행사 및 교육을 통하여 아동과 청소년들이 문화를 경험하거나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애인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하거나 장애인들의 건강증진과 문화발전, 인식개선사업 등을 추진한다.
시민 교육	시민 교육	교육을 통하여 문화다양성 인식 제고 및 가치를 확산한다. 학교 교육을 포함하여 교원 교육 및 다양한 행사를 통하여 문화다양성 이해를 높인다.
국제 교류	국제 협력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한 행사 및 교육,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지원한다. 세계 다양한 도시들과 예술·음악·역사 등 문화를 교류하고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 등을 파견하는 등의 정책으로 글로벌 역량을 강화한다.

## 2. 문화적 삶의 질 향상<sup>9)</sup>

### ●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이주와 통합 관련 사업

- ‘북한이탈주민 남북한주민어울림한마당 개최’, ‘다문화 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및 글로벌 인재 육성’,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의 주간’ 정책 등.

### ● 장애인을 위한 문화접근성 강화

- 장애인을 위한 문화접근성 강화와 관련된 사업은 ‘장애인 스포츠 참여 환경 조성’과 ‘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 등이 있음.

### ● 성평등 인식 제고

- 성평등 인식제고 및 확장과 관련된 사업은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확대 공모사업’, ‘양성평등 문화환경 조성사업’, ‘성인지 관점의 대중매체 모니터링 및 환류체계 구축’ 등이 있음.

9) 구체적인 정책은 「제2차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이행 국가보고서 작성 연구」 참조.

### ● 노인의 문화적 표현 기회 확대

- 노인의 문화적 표현의 기회 확대와 관련된 사업은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서울시 50+사업' 등이 있음.

### ● 문화나눔사업

- 사업은 구체적으로 공연나눔사업, 창작나눔사업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 가운데 공연나눔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에게 공연 관람료 지원(사랑티켓)', '문화소외지역에 문화프로그램 제공(소외계층문화순회)', '문화소외 지역주민들에게 공연 프로그램 지원(방방곡곡문화공감)'으로 구성되고, 창작나눔사업은 '소외지역의 생활문화권이 동일한 주민들의 자율적인 문화활동 형성 계기 마련(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으로 구성됨.

### ● 디지털 지식정보격차 해소

- 디지털 지식정보격차 해소 사업에는 문화소외계층을 주된 대상으로 한 작은 도서관 활성화 사업, 내 손안의 도서관 사업, 소리책 나눔터 사업, 토요 NIE 교실 운영 등이 있음.

## 3.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

### ● 소외된 문화, 예술에 대한 지원

- 소외된 문화, 예술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사업은 '예술인 창작 안전망 구축', '지역문화컨설팅지원(지역인력양성사업)',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이 있음.

### ● 미디어 다양성의 향상

- 미디어 다양성의 향상과 관련된 사업은 '미디어 다양성 모니터링', '독립영화제 개최지원, 독립영화 제작 지원, 다양성 영화개봉지원과 관련된 독립영화', '문화다양성 소재 웹툰개발 사업', '인디음악 지원사업' 등이 있음.

● 예술교육

- 예술교육과 관련된 사업은 '예술꽃씨앗학교', '국립국악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등이 있음.

● 전통문화 대표분야 육성지원 사업

- 전통문화 대표분야 육성지원 사업과 관련된 사업은 '전통문화 대표분야 육성지원'과 '농촌축제지원사업' 제정이 있음.

## VI . 대안 및 권고



### 1. 문화다양성 지침 규정

#### ● 필요성

- 현행 문화다양성법은 제정 과정에서 다른 부처 법령과의 충돌을 염려하여 대단히 형식적이고 골격 중심의 법률로 제정.
- 문화다양성의 개념이 정립되지 못한 채 다문화와 혼동되어 사용.
- 문화다양성 협약 상의 지침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

#### ● 방안

- 문화다양성 협약 상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 원칙, 주권 원칙, 모든 문화에 대한 동등한 존엄성 인정과 존중 원칙, 국제적 연대와 협력 원칙, 개발의 경제적, 문화적 측면의 상호 보완성 원칙, 지속가능한 개발 원칙, 공평한 접근 원칙, 개방과 균형 원칙 등을 기본원칙이나 이념으로 명시하는 방안.
- 문화다양성 협약의 정신을 간접적으로 규정하는 방안.

#### ● 기대 효과

- 문화다양성의 목표와 정책 방향을 구체화.
- 문화다양성 개념의 올바른 정립.
- 인권과 민주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

## 2. 지방자치단체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근거 명시

### ● 필요성

- 현재 서울특별시(2017.05.18.제정), 부산광역시(2017.03.22.제정), 광주광역시(2017.01.01.제정), 경기도(2017.03.13.제정), 충청북도(2017.11.10.제정), 전라남도(2016.12.01.제정), 제주특별자치도(2017.06.02.제정) 등 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
- 조례 제정 확산을 위해서는 조례 제정의 근거 명시 필요.
- 지역적 문화다양성 증진 필요.

### ● 방안

- 지방자치단체가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을 명시.

### ● 기대 효과

- 조례 제정 지자체 증가.
-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다양성 정책 입안.
-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문화다양성 위원회 설치.
- 지역적 합의가 가능한 사회적 소수자를 조례에 명시 가능.

## 3.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모니터링 체계에 적합한 법률 정비

### ● 필요성

- 현행 문화다양성법에서는 기본계획만으로 정책의 구체적 분야를 이해하기 어려움.

### ● 방안

- 모니터링 목적 분야에 따라 지속가능한 문화 거버넌스 체계 지원,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균형적인 흐름

및 예술가와 문화 전문가의 이동성 증대, 지속가능한 발전 체제에 문화 통합, 인권과 기본적 자유 증진 분야를 명시.

- 새로운 문화환경 도래에 대비하여 미디어, 정보화, 지역문화, 동아시아 문화권, 통일 대비 문화적 현상과 특징을 고려한 정책 분야 명시.

#### ● 기대 효과

- 법령에서 문화정책 수단 또는 조치를 인식하고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
- 새로운 문화환경에 적합한 문화다양성 정책 입안.

## 4. 정책 대상의 명확화

#### ● 필요성

- 문화다양성법은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책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있지는 않음.

#### ● 방안

- 장애인, 이주민, 노인, 북한이탈주민, 아동청소년 등 정책 대상을 규정할 필요성.
- 문화다양성 분류체계에 따라 국적, 민족, 인종, 성별, 장애, 세대 등의 기본 영역과 종교, 소득, 혼인, 전통, 지역, 예술취향 등의 환경 영역을 구분하는 방안.

#### ● 기대 효과

- 정책 대상에 대한 문화복지 증진.

## 5. 양성평등 인식 제고를 위한 법정비

### ● 필요성

- 양성평등 관련 입법이 많으나 문화적 차원에서 양성평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의 근거는 미약.
- 양성평등 관련 문화적 인식 차이로 인한 갈등이 현실적으로 존재.

### ● 방안

- 양성평등 문화환경 조성사업 명시.
- TV, 온라인, 신문, 잡지 등 다양한 대중매체가 성(性)인지 관점의 정책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 ● 기대 효과

- 양성평등 관점의 문화다양성 인식 제고.

## 6. 시민사회 참여를 위한 법정비

### ● 필요성

- 문화다양성법에 시민사회 참여 규정 미비.
- 시민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입법이 미비한 상황이므로 문화다양성법을 통해 지원 필요성 높음.
- 법률은 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의무 규정이 다수임.
- 조례를 통해 규정 가능한 부분이 기대됨.

### ● 방안

- 상호문화교육 활성화 규정 명시 가능.
- 지역의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시민단체 지원 근거 규정 마련.

- 
- 문화다양성 지표에 따른 실태조사와 시민참여 지원 규정 마련.

- 기대 효과

- 시민사회의 참여 확대.

## 참고문헌



### 단행본

- 김규원(2014). 「국외 문화다양성 정책 사례조사 및 분석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김면(2017a). 「2016 문화다양성 정책 연차 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 김면(2017b). 「문화다양성 정책현황 및 발전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김태환(2015). 「다문화사회와 한국 이민정책의 이해」. 집사재.
- 김효정(2012).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문화정책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류정아(2016). 「2015 문화다양성 정책 연차 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 서헌제(2013). 「문화다양성의 법제적 구현」. 한국학술정보(주).
- 정갑영 외(2007). 「문화다양성협약 실행을 위한 문화정책과제 및 교류협력사업 개발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조옥라(2013).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전략 수립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채형복(2013). 「국제인권법」. 높이깊이.
- 황동미(2003). 「국제 문화다양성 협정 체결에 대한 연구」. 영화진흥위원회.

---

## 논문

- 김남국(2010). “문화적 권리와 보편적 인권”. 「국제정치논총」, 50(1), pp.261-284.
- 김 면(2017). “다양한 가치의 공존, 문화다양성 정책의 역할과 과제”. 「문화관광 인사이트」, (110), pp.1-5.
- 김재광(2015). “문화공공성과 문화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과제”. 「공법연구」, 43(3), pp.52-79.
- 김창규(2014). “문화법정책의 이론과 실제”. 「법과 정책연구」, 14(3), pp.749-794.
- 니나 오블젠(2008). “‘우리의 창조적 다양성’에서 문화다양성협약에 이르기까지”. 「유네스코와 다양성」. 유네스코한국위원회, pp.107-129.
- 박병도 · 김병준(2009). “문화다양성과 국제법-문화다양성협약을 중심으로-”. 「일감법학」, 16, pp.377-413.
- 박종현(2015). “문화복지의 헌법적 의의와 실천”. 「중앙법학」, 17(2), pp.43-82.
- 서순복(2007). “문화의 민주화와 문화민주주의의 정책적 함의”. 「한국지방자치연구」, 8(3), pp.23-44.
- 서헌제(2008). “문화다양성협약,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학술대회, pp.19-33.
- 이동성 · 주재홍 · 김영천(2013). “문화다양성 교육의 개념적 특징 및 이론적 배경 고찰”. 「다문화교육연구」, 6(1), pp.51-72.
- 임학순 · 채경진(2013). “새 정부의 문화정책 이념과 발전방안”.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pp.1150-1178.
- 장의선(2016). “국내외 주요 제도권 문서에 나타난 ‘문화다양성’ 개념의 해석적 고찰-유네스코의 주요 문서와 국내의 관련 법률을 중심으로-”. 「글로벌교육연구」, 8(4), pp.99-127.
- 정갑영(2005). “우리나라 문화복지 정책의 흐름과 전망”. 「문화정책논총」, 17, pp.225-243.

정상우(2016). “다문화사회 사회통합을 위한 조례 개선방안”. 「헌법학연구」, 22(3), pp.375-404.

정상우(2017). “다문화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법과인권교육연구」, 10(3), pp.45-69.

조경만(2011). “생물다양성과 문화다양성의 세계”. 「생물다양성은 우리의 생명」, 유네스코한국위원회. pp.138-163.

한건수(2015). “한국 사회와 문화다양성: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의 의미와 과제”. 「국제이해교육연구」, 10(2), pp.163-199.

한건수 · 한경구(2011). “다문화주의를 넘어서 문화다양성과 국제이해교육으로”. 「국제이해교육연구」, 6(1), pp.1-33.

한회련(2018). “문화다양성협약에 따른 주요 국가의 정책 비교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외국문헌

Jennifer K. & Gneviève V.(2013). 「L'interculturel. Principes et réalités à l'école」. 장한업 옮김. 「상호문화: 학교의 원칙과 현실」. 교육과학사.

Katérina S.(2000). UNESCO and the Issue of Cultural Diversity: Review and Strategy 1946-2000, UNESCO.

Martine A.(2010). 「L'education interculturelle」. 장한업 옮김. 「유럽의 상호문화교육」. 한울.

UNESCO(1982b). Mexico City Declaration on Cultural Policies World Conference on Cultural Policies, Mexico City, 26 July - 6 August 1982. UNESCO.

UNESCO(2005). 「Sharing a World of Difference the Earth's linguistic, cultural and biological diversity」.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역. 「지구의 언어, 문화, 생물 다양 성 이해하기」. 유네스코한국위원회.

UNESCO(2007). Links between Biological and Cultural Diversity, UNESCO.

---

UNESCO(2009). 「Investing in Cultural Diversity and Intercultural Dialogue」.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역. 「유네스코 세계 보고서: 문화다양성과 문화 간 대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UNESCO(2017). 2018 RE | SHAPING CULTURAL POLICIES – Advancing creativity for  
development Summary, UNESCO.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역, (문화다양성 협약 글로벌 리  
포트) 문화정책의 (재)구성: 발전을 위한 창의성 증진.

입법평가 Issue Paper 18-15-⑦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

발행일 2018년 11월 15일

발행인 이익현

발행처 한국법제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15 (반곡동, 한국법제연구원)

T.044)861-0300 F.044)868-9913

등록번호 1981.8.11. 제2014-000009호

<http://www.klri.re.kr>

---

1. 본원의 승인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禁함.
2. 이 책자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

ISBN 978-89-6684-895-9 93360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15 (반곡동, 한국법제연구원)  
T.044)861-0300 F.044)868-9913 <http://www.klri.re.kr>



ISBN 978-89-6684-895-9  
값 5,500원